도시가스시설 검사 처리 세부지침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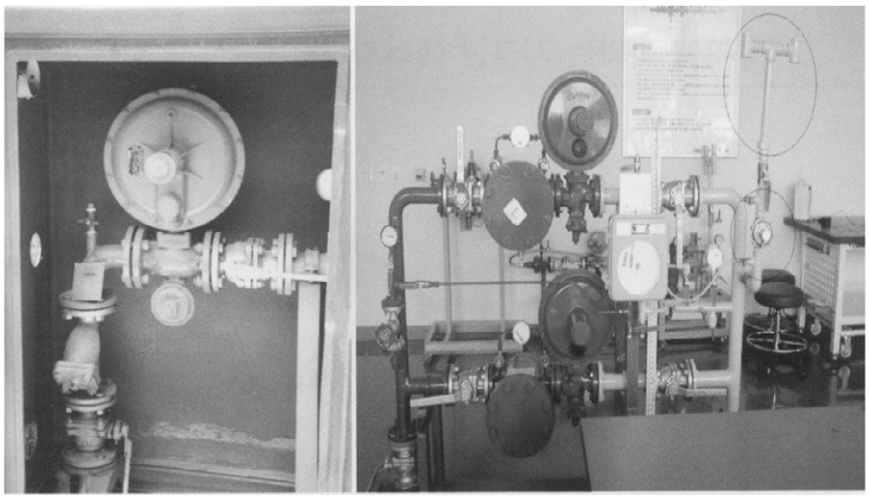

도시가스시설 검사 처리 세부지침이 개선되었다.

개정된 주요 내용은 ▲내압 기밀시험 실시방법 개선 ▲전기방식 생략 ▲사용자공급관 입상관 밸브 설치위치 개선 ▲용접 및 비파괴시험 공정 입회범위 개선 ▲방호구조물 설치기준 제정 ▲사용자공급관 계통도 제출 ▲완성검사 필증현장 발급대상 추가 등이다.

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한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(http://www.kmcca.or.kr) 공개자료실에 게재되어 있다.[편집자 주]

주요 개정 내용

1. 내압 기밀시험 실시방법 개선

중압 이상인 배관의 현장 필증 발급의 경우 당일 용접부는 업체의 1차 현장판독 후 내압 기밀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저압의 경우에도 업체의 1차 판독 결과가 이상이 없을 경우 기밀시험을 실시토록 개선되었다.

2) 전기방식 생략

T/F로 연결된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으로서 전기부식의 우려가 적은 2m 이하의 모든 지하매설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은 전기방식 조치를 생략하였다.

3) 사용자공급관 입상관 밸브 설치위치 개선

다세대 주택,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동 전체를 차단할 수 있는 1개의 입상관 밸브로 라인밸브를 갈음토록 개선하였다.

4) 용접 및 비파괴시험 공정 입회범위 개선

비파괴 시험이 없는 노출배관의 용접공정 및 비표삽입을 생략하는 용정공정은 입회를 생략하고 노출 사용자공급관 설치공정은 지하매설 배관의 1일 감리 또는 최종감리 시 병행확인토록 개선하였다.

5) 방호구조물 설치기준 개정

가스배관 매설깊이 미 유지 시(지면으로부터 0.3㎜ 미만) 설치하는 철근콘크리트 방호구조물 기준을 제정하였다.

6) 사용자공급관 계통도 제출

사용자공급관의 전체 계통도 제출 시 동일 형태의 건물부분의 계통도는 간략하게 작성하여 제출토록 개선하였다.

7) 완성검사 필증 현장 발급대상 추가

가스배관의 이설 · 교체공사 후 즉시 가스가 통입되어야 하는 시설과 완성검사일에 가스를 통하고 있는 기존관과 신설관을 연결하여 가스가 통입되어야 하는 시설을 추가하였다.